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86 호 2021. 4. 1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0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3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07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안내 공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08호[공시송달 공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15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2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4. 1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주 1본)
3. 점용·사용의 장소 : 연암동 159-2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단기 : 18m²
 - 장기 : 0.196m²
 - 나. 기 간
 - 당초 일시 : 2021. 3. 18. ~ 2021. 3. 19.
 - 계속 : 2021. 3. 20. ~ 2035. 5. 31.
 - 변경 일시 : 2021. 4. 13. ~ 2021. 4. 14.
 - 계속 : 2021. 4. 15. ~ 203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공사 동**지사
 - 나. 주 소 : 울산**시 *구 명**3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7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상방1길 19-1	연암동 432-8	2021. 4. 15.	건축물 멸실
상방로 48-1	화봉동 431-5	2021. 4. 15.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4.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73호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장

나. 주소 : 울산**시 *구 중** 201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CCTV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시례동 608-6번지 외 2개소

나. 면적

- 일시: 3m²

- 계속: 1.08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일시: 2021. 4. 14. ~ 2021. 6. 14.

계속: 2021. 6. 15.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0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안내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 대상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신청인의 자격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3. 신청서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복구청 총무과(인사담당)

4. 신청기간 : 2021. 4. 13. ~ 2021. 7. 13.

5. 제출서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신청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소청심사 결정 및 법원판결 등 해직·징계처분 관련 자료 등

6. 심의·결정 절차

- 해직공무원등에 대한 심의·결정은 복구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 위원회는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 위원회는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

7. 그 밖의 신청 및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052-241-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부표] <신설 2021. 4. 13.>

사건 경위서

해직 []

징계 []

일시	
----	--

장소	
----	--

사건 경위	
-------	--

증명방법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13.>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 족 대 표 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해직공무원등 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3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4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5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6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4. 13.>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기간 연장 사유서

해직공무원등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해직공무원등과 다른 경우)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해직공무원등 과의 관계	
연장 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13.>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해직공무원등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해직공무원등과 다른 경우)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해직공무원등 과의 관계		
신청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하천구역(대밭골천)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소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15. ~ 2021. 4. 29.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고
소재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복구 송정동	1473	미상	미상	불법경작	50	
복구 송정동	1473	미상	미상	불법경작	60	
복구 송정동	1473	미상	미상	불법경작	20	

5. 공시송달내용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4. 26.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15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1. 4. 15.(목) ~ 4. 28.(수)(13일간)
2. 모집대상
 -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지원·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장 또는 종사자
 - 위기청소년 관련 협력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
3. 신청서식 :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게재 및 복구청 교육청소년과 비치
4. 모집인원 : 00명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4. 22.(목) ~ 4. 28.(수)(5일간)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복구청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2-241-7399)(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24(연암동) 복구청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6. 기 능
 -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서비스 지원 협력방안 논의
7. 선정결과 : 2021. 5. 7.(금) 개별통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교육청소년과(☎ 052-241-7373)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